

ICN 정관

1조 명칭과 정의

- 1항 본 연합체의 명칭은 국제간호협의회(ICN)라 한다.
- 2항 국제간호협의회(ICN)는 정관 제 7조에 의해 정식으로 가입되고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승인된 각국 간호협회의 연합체이며 ICN의 조직과 기능은 국제, 종족, 인종, 성별, 종교적, 정치적, 신념 및 사회적 지위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다.

2조 취지

ICN의 설립취지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상병자를 돌보는 데 미치는 간호의 기여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공동원칙사를 위해 각국 간호협회에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3조 목적

- 1. 간호원의 자질과 간호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각국 간호협회를 돕기 위한.
- 2. 강력한 각국 간호협회로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 3. 국제적으로 간호원과 간호사업의 권위있는 공식 대변자로서 봉사하기 위한.
- 4. 간호원의 전문적,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국 간호협회를 돕기 위한.

4조 기능

- 1. 각국 간호협회의 조직을 강화하도록 돕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문과 지지를 한다.

편집자주 : 본 ICN정관은 1979. 9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1979년도 ICN-CNR에서 개정된 것임.

- 2. 하기사황의 발견과 향상을 위해 각국 간호협회를 보조한다.
 - a. 대중을 위한 건강봉사.
 - b. 간호교육, 간호실무 및 간호연구.
 - c.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복지.
- 3. 국가간 간호원의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한다.
- 4. 타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국제수준에서 간호원을 대표하며 간호에 대한 공식적인 대변자로서 봉사한다.
- 5. 간호의 발전과 또는 간호원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과 신탁을 접수하고 운영한다.
- 6. IC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업무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5조 간호원의 정의

간호원은 기초 간호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국가에서 간호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기초간호교육은 공식적으로 인가된 교육과정으로서 간호실무와 특별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연구과정을 위해 광범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일급간호원의 교육과정은 행동과학, 생명과학, 간호과학의 학습 및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실무를 이행하고 지휘함에 그리고 지도자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급간호원은 모든 현장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환자의 간호를 계획, 시행, 평가하는 책임을 지며 건강팀의 한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간호요원이 단일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급간호원은 간호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일급간호원의 감독하에, 그리고 일급간호원과의 협조하에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6조 회 원

1항 회원국 자격기준

한 나라에서 하나의 간호협회나 간호연맹이 회원으로 될 수 있으며 간호협회나 간호연맹이 없는 나라에서는 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적인 기구의 간호분과 위원회로도 ICN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단,

- a. 간호협회의 정관, 시행세칙 혹은 규칙은 본정관 1조 2항에서 정의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혹은 2조와 3조에서 ICN의 정관과 시행세칙으로서 기술한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b. 간호협회가 다른 의료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면 그 협회는 1조 2항 혹은 ICN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조직과는 별개의 시행세칙을 갖는다.
- c. 간호협회는 회원과 공식적인 위임을 받아 간호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대변자가 된다.
- d. 정관 제 5조에 명시된 간호원의 정의에 합당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국가 해당국을 대표하는 회가 된다.

2항 회원자격의 박탈

ICN이사회는 회원인 협회가 ICN이 정한 다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후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이사회는 위원회를 임명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한다.
- 2. 회원국은 회원자격의 박탈이유에 관한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 3. 이사회는 회원국이 서면으로, 또는 회원국이 원한다면 위원회에서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4. ICN은 심사결과에 나타난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방법을 해당협회에 자문한다.
- 5. 이사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해당협회에 허용하며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6. 출석이사 투표결과 2/3의 찬성이나 서면투표로써 이사회는 회원국의 재명을 CNR에 제의한다.
- 7. CNR은 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명을 의결한다.
- 8. 제명당한 협회가 지불한 당해년도의 각종 회

비는 환불한다.

회원국 협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계속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 이사회는 상기에서 언급한 체명절차가 수행되고 있음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회원국 협회의 의무

각 회원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a. 각 협회는 협회장이 선출된 즉시 협회장의 성명과 주소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b. 각 협회는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6개월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c. 2년에 1회이상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에 답변해야 한다.
- d. 각 협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회원수에 근거한 연회비를 ICN에 통보하여야 한다.
- e. ICN의 정관, 정책, 입장과 성명등의 개정을 위한 안을 CNR에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 f. 각 협회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협회가 되기 위하여 회원수를 증가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다.

4항 회원 탈퇴

회원국은 회비의 체불이 없는 경우, ICN차기 이사회 3개월전에 이사회에 문서로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원국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게되며 이와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책임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7조 회 비

1항 모든 회원의 연회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실회원수에 기초를 두며 ICN본부가 위치한 국가의 화폐로 산정된다. 실회원이란 5조에서 기술한 간호원의 정의에 기초를 둔 회원으로 한정하며, 해당국 협회에 회비를 지불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연회비는 이사회에 제안에 따라 CNR이 확정한다.

2항 연회비는 해당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ICN에 사전통고함으로써 2회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시기는 1월 31일과 6월 31일로 한다.

신입회원국의 회비는 입회년도 일년분이며 7월 1일이후에 가입한 회원국의 회비는 연회비의 1/2로 한다. 회비는 가입통고 후 30일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8조 ICN지역

1항 ICN이사의 추천 및 선거를 위하여 다음의 7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 a. 아프리카
- b. 동부지중해
- c. 유 럽
- d. 북 미
- e. 중 남 미
- f. 동남아시아
- g. 서태평양

2항 ICN지역의 수와 구성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CNR에서 결정한다.

9조 CNR

1항 구성

CNR은 매 회원국마다 1개의 투표권을 갖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a. 회원국 정대표는 ICN의 간호원의 정의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회장이 아닐 수도 있다.

b. 회원국은 CNR회의에 대리대표를 보낼 수 있다. 단, 대리대표는 :

- 1. ICN의 간호원의 정의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2. 정대표와 같은 철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3. 회의 참석시 회원국 협회로부터 발부받은 신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c. 이사는 CNR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 투표권은 없다.

단, ICN회장은 선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결인 경우에 결정투표를 할 수 있다.

d. 국가대표가 이사나 임원이 될때, CNR에 대리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리대표는 ICN의 간호원에 대한 정의에 합당한 간호원이어야 하며 회원국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e. 회원국의 사무총장은 CNR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는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2항 CNR의 기능

a. CNR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순위를 정한다.

b. 이사회가 추천한 협회를 ICN의 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

c. 이사회에 의해 ICN회원국의 자격을 박탈한다.

d. 각종 후보명단을 접수하고 이를 선출한다.

e. 이사를 선거한다.

f. 이사회가 제의한 회원당 회비(예산)를 처리한다.

g. 이사회와 회원국의 건의안을 처리한다.

h. 이사회에 의해 따라 ICN지역의 수와 구성을 변경한다.

i. ICN과 FNIF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회계보고서(감사필)를 접수한다.

j. 이사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처리한다.

k. 2년차 회의와 4년차 총회를 개최할 시기와 주최국을 결정한다.

l. 해산결의에 따른 제반절차를 시행한다.

3항 회의

a. CNR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총회시에 개최하는 것을 포함한다.

b. CNR임시회의는 이사회의 요청과 3개 지역에서 회원국 5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해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c. CNR은 선거할 때와 재석 과반수 이상이 무기명투표를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수투표결한다.

d. CNR에서의 발언은 회원국 정대표 및 사무총장과 ICN이사에 한하며 단, 의장이 발언권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표결은 재석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기권자는 과반수계산시 재석수에서 제외된다.

f.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서면(우편)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이는(차기 CNR까지의 2년기간중)에 차기 CNR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0조 임 원

1항 ICN의 임원은 반드시 ICN회원국내에서 명망 높은 간호원으로서,

a. 회 장

b. 제 1 부회장

c. 제 2 부회장

d. 제 3 부회장을 선출한다.

2항 임원은 4년차 총회년도의 CNR정기회의에서 선출되며 전임자의 재임기간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3항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항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며 모든 위원회의 직면에 의한 위원이 된다. 회장은 모든 이사회의와 CNR회의를 주재한다. 부회장은 서열에 따라 회장의 부재시나 직무 이행불능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5항

a. 회장이 공석이된 경우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제 1 부회장이나 제 2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b. 제 3 부회장이 공석이된 경우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는 이사중에서 제 3 부회장을 선출하며 그 기간은 차기 선거 때까지로 한다.

6항 모든 임원은 임기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ICN의 공식문서를 사무총장에게 인계하거나 서면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항에 한해서는 폐기 처분한다.

11조 이사회

1항 구성

a. 이사는 ICN지역별로 선출된 7인과 전체에서 선출되는 4인으로 구성되며 ICN의 상호협의회의 정의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ICN 회원국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4년차 총회 년도에 동시 개최되는 CNR정기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b. 이사중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선한다.

1. ICN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가 공석중인 경우에는 동일지역에서 입후보했던 후보자 가운데 차점자들 이사로 보선하며 보선된자의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사가 공석이 된 지역에서 입후보했던 회원이 없을 경우 이사회는 공석이된 지역의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선한다.
2. 전체에서 선출된 이사가 공석중인 경우에

는동 이사로 입후보했던 후보자 중 차점자를 이사로 보선하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차점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c.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CNR에서 채택된 정책을 수행하고 차기 CNR 회의까지의 2년기간 중에 ICN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한다.

b. ICN의 가입신청을 받으며 각 회원국의 ICN 회원국으로서의 적격여부와 회원자격. 박탈이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CNR에 제의한다.

c. CNR에 ICN 지역의 구성과 수의 변경을 진의한다.

d. CNR에 참석하며 투표권은 없다.

e. CNR의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제의하며 회원국으로부터 접수한 개정안을 CNR에 상정한다.

f. ICN회원국 회원의 1인당 ICN회비를 산정하여 이를 CNR에 제의한다.

g. 특별위원과 그 위원장을 임명하여 모든 위원회로 부터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전문사업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기 전, 각 회원국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h. 정기및 임시 이사회의의 장소와 시간 결정.

i. ICN본부의 설치및 유지에 관한 사항.

j. 년예산의 승인.

k. 감사의 임명.

l. ICN기금에 대한 보호조치.

m. ICN의 출판물에 대한 인준.

n. ICN의 행정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상호협의회의 회원국 상호협의회의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보수를 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결정한다.

o. ICN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2인이상 4인미만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며 이에 회장과 사무총장은 반드시 포함된다.

p. FNIF신탁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3항 임원의 기능

a. 차기이사회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비상사태

를 처리한다.

b. 재정위원회와 행정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문제를 포함한 재정문제에 관해 제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1. 년예산
2. 투자계획
3.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임명
4. ICN본부의 일반정책

4항 회의

a. 정기이사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하며 개최 장소는 CNR회의와 동시 개최될 때를 제외하고는 ICN본부가 위치한 장소로 한다.

b.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되거나, 아사 $\frac{1}{3}$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c. 임기중 연속 3번 결석하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d.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한 사업은 서신, 전화 및 전신에 의해 실행할 수 있으며 차기정기이사회에서 이를 비준하여야 한다.

12조 상임위원회

1항 임명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첫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재임기간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2항 구성

a. 이사회의 별도결정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위원은 ICN의 간호원의 정의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써 회원국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c. 각 위원은 1개이상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d. 각 위원은 1개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

e. 위원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f. 위원장이 공석중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항 보고

상임위원회는 제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항 ICN의 상임위원회로서 전문사업위원회를 둔다. 전문사업위원회는 ;

1. 간호교육, 실무, 봉사 및 연구와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복지에 관한 경향과 이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고 이에 관한 건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2. FNIF 신탁기금 및 기타기금 수입을 특정 교육계획등에 지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13조 총회

ICN총회는 매 4년마다 1회이상 개최하며 개최시기 및 주최국은 CNR회의에서 결정된다.

14조 임원후보의 추천

1항 a. 사무총장은 총회년도에 동시 개최되는 CNR회의의 최소한 16개월전에 추천서, 동의서 및 이력서 서식을 각 회원국에 발송해야 한다.

b. 각 회원국은 회장, 부회장, 전체 및 지역대표 이사에 대한 후보 각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c. 임원이나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이사로 추천된 후보는 7개 ICN지역의 회원국의 회원이어야 한다. 지역이사로 추천된 후보는 해당지역의 회원국 회원이어야 하며 그 지역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d. 후보를 추천하는 모든 회원국은 후보자에 관한 상세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는 ICN의 간호원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회원국 협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당선후에 봉사할 것을 사전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e. 동일선거에서 모든 후보는 1개이상의 직에 임후보할 수 없다.

f. 추천서류에는 추천회원국의 회장 및 사무총장이 서명해야 하며 총회년도에 동시 개최되는 CNR회의 개최 8개월 전까지 봉사를 한다는 동의서와 신상명세서를 ICN본부로 보내야 한다.

2항 임후보절차

a. 임원이나 이사로 임후보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회원국의 추천을 포함한 3개이상의 회원국 추천을 받아야 한다.

b. ICN지역이사 후보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원

국 협회의 단일추천단으로 가능하다.

- 3항 a. 후보추천서류를 심사하여 완전히 구비된 회장후보 2인이상, 부회장후보 6인이상, 7개 지역 이사후보 각 2인 이상 및 전체 대표이사 후보 8인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 b. 완료된 명단은 총회년도에 동시 개최되는 CNR회의 개최 4개월전에 각 회원국에 우송한다.

15 소 선 거

- 1항 이사와 임원은 총회년도에 동시 개최되는 CNR회의에서 선출한다.
- 2항 이사회 임원과 이사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행해지며 각국의 정대표(혹은 머릿대표)는 투표권 1표를 가진다.
- 3항 무기명 투표용지는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되어 있다.
- a. 한 용지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명단이 적혀 있으며 회원국 정대표(머릿대표)는 회장에 1표, 부회장에 3표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 b. 또 하나의 용지는 7개 지역이사 후보자를 각 지역별로 구분한 명단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7개 지역이사 후보에 지역별로 한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 또 한 용지는 전체대표이사 후보자명단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이를 선출하기 위해 4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d. 총회년도에 동시 개최되는 CNR의 개최식에
1. 회장은 간호원이 아닌 사람으로 게표원을 임명한다.
 2. CNR은 투표일과 시간을 정한다.
 3. CNR은 선거결과 발표시간을 정한다.
- e. 선거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때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발표한다.
- f. 후보자별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g. 3명의 부회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제 1 부회장으로 하고 그 다음 득표순위에 따라 제 2, 제 3 부회장으로 한다.
- h. ICN의 7개 지역의 각 지역별 최고득표자를 ICN의 7개 지역이사로 한다.

- i. 최고득표순위에 따라 4명을 전체대표이사로 한다.
- j. 동일 직책에 대한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동일득표자에 대해 2차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모든 재투표는 CNR이 산회하기 전에 결정하도록 한다.
- 4항 모든 투표용지는 6개월간 보존되며 이 시기가 끝나면 이를 폐지한다.

16 조 개 정

정관은 CNR참석 투표자 $\frac{2}{3}$ 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정관개정안은 각 회원국이 이사회에 제출하므로써 그 안이 CNR에 제출되며 또한 이사회가 CNR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안된 모든 개정안은 차기 CNR회의 개최 전 적어도 12개월내에 ICN본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17 조 정 족 수

회의 개최의 정족수는;

1. CNR: 각 회원국 대표의 $\frac{1}{3}$ 이상
2. 이사회: 임원중 2명과 이사중 6명
3. 재정및 행정관리위원회: 임원중 3명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18 조 ICN의 해산

ICN은 아래의 경우 CNR의 특별, 정기, 임시회의에서 해산될 수 있다. 단;

1. 각 지역마다 회원국 $\frac{1}{5}$ 이상이 이사회에 서면으로 해산을 권고할 때 그 효력이 있다.
2. 모든 회원국에 해산제의를 통보하여 각 회원국이 접수한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했을 경우.
3. 회원국대표 $\frac{2}{3}$ 이상의 참석.
4. 재석 회원국대표 $\frac{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5. 부채에 대한 완납 및 INC직원, 이사 및 위원회 위원의 봉급을 지급한 나머지 재산과 현금은 前 회계년도에 납부한 회비에 비례하여 각 회원국에 분배한다.